



제433회국회(임시회)
제 1 차 국 방 위 원 회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및 복무연장 지원근거 마련〉
■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022호)

2026. 3.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 수 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6

I.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미애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5. 12. 9.
- 3) 회 부 일 : 2025. 12.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열악한 복무 여건과 경제적 유인 부족 등으로 초급간부(복무기간이 5년 미만인 장교 및 부사관) 지원자는 감소하고 전역하는 인원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역병의 봉급을 대폭 인상하는 등 현역병 위주의 처우개선이 우선시 되고 있음.

한편, 저출생으로 인한 현역병 징집 대상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하여 초급간부의 신규 획득과 현행 인력의 유출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초급간부에 대한 처우를 전반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및 복무연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초급간부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이를 통한 국방력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7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유도 및 복무기간 연장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7 신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6조의7(초급간부에 대한 지원) ① 국방부장관은 복무기간이 5년 미만인 장교 및 부사관(이하 이 조에서 “초급간부”라 한다)의 장기복무 및 복무기간 연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최근 현역병 봉급이 단기간 내 급격히 인상됨에 따라, 초급간부와 병사 간 보수 격차가 빠르게 축소되고 있으며, 임무 수행에 따른 책임과 난이도에 비해 초급간부의 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음¹⁾. 이로 인해 초급간부의 충원율이 저하²⁾되는 등 군 인력 운용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³⁾⁴⁾.

1) 참고자료 1 참조

2) 참고자료 2 참조

3) 2026년도 국방부 예산에 따르면 병 인건비는 5년 전인 2021년에 비해 60.9% 인상되었으나, 부사관 인건비는 18.4%, 장교 인건비는 12% 인상에 그쳤음.

□ 이처럼 군 간부에 대한 경제적 유인이 약화되는 가운데, 저출생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문제가 본격화⁵⁾되면서 군 인력 수급의 구조적 불안정성이 점차 심화되고 있음.

특히 초급간부는 전투력 유지와 병력 통솔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안정적 확보는 중·장기적인 국방력 유지에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복무여건 악화와 인구 감소라는 이중고 속에서 초급간부의 신규 획득을 촉진하고 기존 인력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로서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고 보임.

첫째,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여건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향후 인구 절벽으로 인한 국방 인력 수급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최근 병사 봉급의 가파른 인상으로 초급간부의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가 부각되면서 사기 저하 및 상대적 박탈감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러한 점에서 초급간부의 책임과 역할에 상응하는 지원의 필요성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복무 여건 개선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정책적

[계급별 인건비 상승률]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1년(A)	2026년(B)	상승률(A/B)
장교	4,483,634	5,026,083	12
부사관	6,052,546	7,172,239	18.4
병	2,265,331	3,646,434	60.9

자료 : 국방부, 국회예산정책처

4) 2024 국방통계연보에 따르면, 학군사관후보생(ROTC) 경쟁률은 2014년 4.8대 1에서 2023년 1.8대 1로 급감하였으며, 육군 부사관 획득률 역시 2023년 기준 45.8%로 2022년 77.2%에 비해 감소하였음.

5) KOSIS 인구통계포털에 따르면, 20세 남성 인구는 2020년 334,322명이었으나 2026년 233,182명으로 감소하였고, 2040년에는 157,964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기준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먼저, 개정안의 규정 내용이 다소 추상적일 여지가 있음. 안 제46조의7제1항6)에서 규정한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제도의 적용 범위와 실질적인 효과를 가늠하기 어려워 보임.

또한 군인의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일반적인 규정은 이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⁷⁾에 마련되어 있으며, 초급간부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인 가산복무지원금 및 장려금의 지급 사항 역시 동 법률에 기 규정되어 있는 점⁸⁾을 고려할 때, 당해 개정안의 입법 실익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6) 안 제46조의7(초급간부에 대한 지원) ① 국방부장관은 복무기간이 5년 미만인 장교 및 부사관(이하 이 조에서 “초급간부”라 한다)의 장기복무 및 복무기간 연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 (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군인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군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8) 「군인사법」 제62조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① 국방부장관은 우수한 군인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기능대학과 학위과정이 설치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재학생으로서 장교나 부사관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선발하여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장교나 부사관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중략)

④ 제1항에 따른 사람의 선발·취소,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범위·방법,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환수할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의2 (장려금의 지급) ① 각군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62조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관후보생이 될 예비장교후보생

2.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

3. 예비장교후보생이 아닌 대학 재학생으로서 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이 될 학생(군의 인력 운영상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울러 초급간부에 대한 지원 방안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할 경우, 해당 사항을 본 법률에 규정할 것인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또는 「군인복지기본법」 등 다른 군인 관련 법률에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역시 필요하다고 보임.

□ 참고로, 본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미애의원이 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5021호)의 심사 경과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국방부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⁹⁾에 국가가 군인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이미 초급간부를 포함한 군인 전반에 대한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10

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 (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군인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군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참고자료

1. 최근 5개년 초급간부 봉급 변화 및 병장 봉급과의 비교

(월지급액, 단위 : 원)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소위 1호봉 (병장비교)	1,727,400 (+1,118,900)	1,755,500 (+1,079,400)	1,785,300 (+785,300)	1,892,400 (+642,400)	2,017,300 (+517,300)
하사 1호봉 (병장비교)	1,678,100 (+1,069,600)	1,705,400 (+1,029,300)	1,770,800 (+770,800)	1,877,000 (+627,000)	2,000,900 (+500,900)
병장	608,500	676,100	1,000,000	1,250,000	1,500,000

*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군인의 봉급표 참조

2. 최근 3개년 각 군 초급간부(하사, 중·소위) 충원율

(중·소위)

(단위 : 여명, %)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6월까지)		
	정원	운영인력	충원율 (운영률)	정원	운영인력	충원율 (운영률)	정원	운영인력	충원율 (운영률)
육군	14,100	14,300	101.6%	13,700	13,600	98.8%	13,700	13,400	97.6%
해군	1,500	1,600	107.9%	1,500	1,500	104.7%	1,500	1,500	103.7%
공군	2,900	2,800	96.4%	2,900	3,000	101.2%	2,900	3,000	103.6%
해병	800	800	100.5%	800	800	96.7%	800	700	88.1%

(하사)

(단위 : 여명, %)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6월까지)		
	정원	운영인력	충원율 (운영률)	정원	운영인력	충원율 (운영률)	정원	운영인력	충원율 (운영률)
육군	23,600	19,600	82.8%	22,800	16,000	70.0%	22,300	14,900	66.6%
해군	6,200	5,800	93.5%	5,700	4,700	82.3%	5,700	3,800	66.4%
공군	6,600	6,100	92.4%	6,500	5,900	91.4%	6,500	5,200	80.0%
해병	2,300	2,100	89.3%	2,300	1,800	77.5%	2,300	1,400	62.1%

* 충원율 : 정원 ÷ 운영인력

* 소위 정원은 따로 없으며, 중·소위 통합 정원으로 충원율 산출

3. 최근 3개년 장교 장기복무 선발율

(단위 : 여명, %)

구 분	2022년 선발완료			2023년 선발완료			2024년 선발완료		
	지원	선발	선발율	지원	선발	선발율	지원	선발	선발율
장교	2,790	1,560	56.0%	2,730	1,390	50.9%	2,770	1,600	57.6%

* 장기복무 선발율 : 지원인원 대비 선발인원